

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20일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
	주소	전화번호	
법 인	명칭	전화번호	
	소재지		
대표자	성명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
	주소	전화번호	

「민법」 제32조 및 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설립발기인의 성명, 생년월일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이하 같음.),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(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) 1부 2.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. 창립총회 회의록(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) 1부 4. 재산목록(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) 및 그 증명서류와 출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※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 불요 5.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·지출 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6.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, 생년월일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), 주소,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7. 사원명부(사단법인의 경우) 1부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(건물) 등기사항증명서	

처 리 절 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중앙선거관리위원회(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)